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본 대학원은 기독교 신학의 학술이론과 그 체계적 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며,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 능력을 개발하여 기독교 복음선교와 한국교회의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본 대학원은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이하 "대학원")이라 칭한다.
- **제 3조 (과정)** ① 본 대학원은 목회신학석사(M.Div.)학위 3년 과정, 목회신학석사(M.Div.)학위 2년 과정, 신학석사(Th.M., M.T.S.)학위과정, 목회신학박사(D.Min.)학위과정, 철학박사(Ph.D.)학위과정과 연구 과정 을 둔다. (개정 2014. 4. 21)
 - ② 대학원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연계과정과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및 「석·박사통합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1)
 - ③ 대학원에 국내 다른 대학 학사학위와 석사 학위 연계과정(이하 "대학간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대학간 연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1)
- **제4조 (학과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3.1., 2014. 4. 21, 2024. 2. 21)
 -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다. (신설 2024. 2. 21)
 -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맞춤형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1)
 - ④ 제3항에 따른 계약학과의 명칭·교육과정과 수업·학생선발·학생정원·수업료 및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2, 21)

제 2 장 입 학

- 제 5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 6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 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9. 2. 26)
 - 1. 신학석사 및 목회신학석사
 - 가.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3년 과정과 신학석사(M.T.S)학위 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 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9. 3. 1, 2014. 4. 21)
 - 나.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2년 과정과 신학석사(Th.M.)학위 과정은 국내외 대학의 신학계열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9. 3. 1, 2014. 4. 21)
 - 2. 철학박사 및 목회신학박사 (개정 2014. 4. 21)
 - 가. 목회신학박사(D.Min.) 과정: (개정 2014, 4, 21)

M. Div., Th. M. 및 M.A 학위취득자로 목회(목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개정 2009. 3. 1) 나. 철학박사(Ph. D.) 과정: (개정 2014. 4. 21)

Th. M., M.Div. 및 M.T.S. 학위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경과자 (개정 2009. 3. 1, 2013. 3. 1)

3. 연구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이거나 교단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자

- 제 7조 (입학제한)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연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2019. 2. 26)
- 제 8조 (지원절차) 대학원 각 전공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 9조 (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입학전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1. 서류심사
 - 2. 필기시험
 - 3. 구술 및 면접시험
 -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 (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제11조 (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되었던 자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제12조 (재입학 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 한 학생이 퇴학 및 제적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 (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이수학점 및 수료

- 제14조 (수업일수 및 수업)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계절 학기에 집중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한 과목(3학점)당 4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15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의 각 학위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1.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3년 과정 : 6학기 (개정 2014. 4. 21)
 - 2.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2년 과정 및 신학석사(M.T.S, Th.M.)학위과정 : 4학기 (개정 2014, 4, 21)
 - 3. 목회신학박사(D.Min.)학위과정 및 철학박사(Ph.D.)학위 과정: 6학기 (개정 2014, 4, 21)
 - ②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연신원위원회에 학점인정 및 수업연한 단축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신원위원회는 개별심사를 통해 수업연한 단축과 이에 해당하는 인정학점을 승인할수 있다. (개정 2009. 3. 1)
 - 1. 본 대학원에서 1학기 9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4.0/4.5 이상의 평점을 받은 자.
 - 2. 국내외 대학원에 입학하여 1학기 9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개정 2009. 3. 1)

-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 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1)
 -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각 6개월 이내
 - 2. 연계과정: 1년 이내
 - 3. 통합과정: 1년 이내
- 제16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과정별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3년 과정: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1)
 - ②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2년 과정, 신학석사(M.T.S., Th.M.)학위과정 :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1)
 - ③ 목회신학박사(D.Min.)학위과정 및 철학박사(Ph.D.)학위과정 :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1)
- **제17조 (이수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연합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8조 (논문지도학점) ① <삭제 2014. 4. 21>
 - ② 논문지도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내규로 정하여 실시한다.
- **제19조 (수료학점)** ①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각 과정에서 학생이 취득해야 할 최소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26)
 - 1.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3년 과정 : 60학점(개정 2009. 3. 1, 2014. 4. 21, 2019. 2. 26, 2024. 2. 21)
 - 가. <삭제 2024. 2. 21>
 - 나. <삭제 2024. 2. 21>
 - 다. <삭제 2024. 2. 21>
 - 라. <삭제 2024. 2. 21>
 - 2. 목회신학석사(M. Div.)학위 2년 과정 : 39학점 (개정 2014. 4. 21, 2019. 2. 26)
 - 3. 신학석사(M. T. S., Th.M.)학위과정 : 30학점 (개정 2014, 4, 21, 2019, 2, 26)
 - 4. 목회신학박사(D.Min.)학위과정 : 36학점 (개정 2014. 4. 21, 2019. 2. 26)
 - 5. 철학박사(Ph.D.)학위과정 : 36학점 (개정 2014. 4. 2, 2019. 2. 26)
 - 6. <②항으로 이동 2019. 2. 26>
 - 7. <삭제 2019. 2. 26>
 - ② 각 학위별, 전공별 학생들은 9학점이상 신청 시 타 전공에서 3학점(1과목) 이상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 3. 1, 항변경 2019. 2. 26, 개정 2024. 2. 21)
- 제20조 (학점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 ② 제1항의 경우 본 대학원의 설강 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9. 2. 26)
 - ③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교수회의 사정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9. 2. 26)
- **제21조 (학기당 이수학점)** ① 각 과정별 학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수 전까지 매 학기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1)
 - ② 본 대학원의 과정별 매 학기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목회신학석사학위(M. Div.) 3년 과정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2. 목회신학석사학위(M. Div.) 2년 과정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3. 신학석사학위(Th. M., M. T. S.) 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4. 목회신학박사(D. Min.)학위과정 및 철학박사(Ph. D.)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015, 1, 26)

제22조 (학점인정) 학점인정은 강의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 (성적의 평가) ① 학업 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17)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해 설
A+ A ⁰ B+ B ⁰ C+ C ⁰ D+ D ⁰ F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70 - 74 65 - 69 60 - 64 이하	4.5 4.0 3.5 3.0 2.5 2.0 1.5 1.0 0.0	I W P NP	Incomplete(성적보류) Withdraw (수강철회) Pass (합격) Non Pass (불합격)

② 학업성적 I 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여되며 당해 학기 내 확정 성적을 제출하면 그 성적이 학적부에 기재된다. (당해 학기 내까지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I는 F로 간주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24조 (등록) 학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
- 제25조 (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납부한 등록(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6조 (휴학) 휴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제3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3. 1]

- 제27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8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9조 (제적)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5.12.23>
 - 2.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5.12.23>
 -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한 자.<개정 2015.12.23>

제 5 장 전과 및 전공변경

- **제30조 (전과)** 대학원 학과간의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13. 8. 26)
- **제31조 (전공변경)** 전공의 변경은 동일계열에 한하며, 연신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3, 1, 2015, 1, 26)
- **제32조 (전과와 전공변경 절차)** ① 전과 혹은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졸업학기 이전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 2019. 2. 26, 2024. 2. 21)
 - 1. 전공변경원(소정양식)
 - 2. <삭제 2024. 2. 21>
 - 3. 성적증명서 (개정 2024. 2. 21)
 - ③ 전공변경 자의 기 이수 학점은 변경된 과정과 전공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신설 2009. 3. 1)

제 6 장 학생의 지도 및 장학금

- 제33조 (학칙준수) 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여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 **제34조 (장학금)**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7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 제35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보다 광범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및 연구의 심오한 학술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과목, 주제,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발표한다.
 - ④ 공개강좌의 수료생이 전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6조 (연구생) ① 4년 제 대학졸업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거 나 교단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연구생 과정의 수업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한다.
 - ③ <삭제 2014. 4. 21>
 - ④ <삭제 2013. 3. 1>
- 제37조 (외국인) ① 외국인으로서 제6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 ③ 외국인 학생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원격수업(distant or online)과목, 계절제 강좌 및 개별식 수업 (tutorial or directive study)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 제38조 (수강료) ①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실비에 한하여 수강생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코자 할 때에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연구생 수강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 8 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 **제39조 (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부터, 박사학위과정은 및 통합과정은 4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다. 단, M.Div 3년 과정은 4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 2014, 4, 21, 2015, 4, 22)
 - ②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0조 (외국어시험)** ① 모든 학생은 입학 후 언제라도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2015. 4. 22)
 - ②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교수회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1)

제 9 장 학 위 논 문

- **제41조 (학위논문 계획서의 제출)** ① 석사과정 3학기(다만, M. Div. 3년 과정생은 5학기), 박사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19, 2, 26)
 - ② 논문계획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1)
 - 1. 학위논문연구윤리준수확인서
 - 2. 학위논문지도에서의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3. 생명윤리준수서약서(해당자에 한함)
- 제42조 (논문작성) 논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학 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 제43조 (논문규격) ①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 규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4조 (논문제출) ①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2023. 2. 6.)
 - ②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업로드 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개정 2023. 2. 6.)
- 제45조 (심사위원) ① 제출된 학위논문은 관련분야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가 추천 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14, 4, 21)
 -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한다. (신설 2014. 4. 21)
- 제46조 (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제출 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 제47조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때,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6)
- **제48조 (심사의결)** ①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2이상 찬성, 박사학위과 정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한다.
 - ②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심사요지와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장은 이를 첨부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 (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50조 (논문제출시한) ① 본 대학원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1)

- 1. 목회신학석사(M.Div.)학위 3년 과정 :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 2. 목회신학석사(M.Div.)학위 2년 과정, 신학석사(M.T.S., Th.M.)학위과정 :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 3. 목회신학박사(D.Min.)학위과정, 철학박사(Ph.D.)학위과정 :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 ②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논문제출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학위 수여

제51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석사 및 박사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5. 4. 22, 2019. 2. 25, 2020. 3. 1.)

- 1. 석사학위과정
 - 가. 학칙 19조의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라.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대체이수를 신청하고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2. 박사학위과정
 - 가. 학칙 19조의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라.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바. 학위논문의 주제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경우,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 3. 석·박사통합과정(석사학위)
 - 가. 학칙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충족하고, 박사과정 교과목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 삭제 >
 - 라. < 삭 제 >
 -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바. 석사학위 취득 시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사학위논문 작성 면제
- 4. 석·박사통합과정(박사학위)
 - 가. 학칙 19조의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라.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바. 학위논문의 주제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경우,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해

당자에 한함)

제52조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사정 및 시기는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4. 4. 21)

- ②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과정별 및 학과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4. 4. 21, 개정 2024. 2. 21)
- ③ 석사학위는 별지 제3호(논문이 있는 경우)·제3호의 1(논문이 없는 경우)·제3호의 2(영문) 서식에 의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4호·제4호의1(영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수여한다.(신설 2019. 2. 26)

제 11 장 직제와 연신원위원회 (개정 2009. 3. 1)

제53조 (직제)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각 학과마다 주임교수를 둔다.

제54조 (지도교수) 본 대학원 각 전공에는 학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09. 3. 1)

제55조 (연신원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신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1)

- ② 연신원위원회는 본 대학 교수 및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 3. 1)
-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6조 (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3. 1)

- ①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7조 (위원회의 소집) ① 연신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 정 2009. 3. 1)

-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개정 2009, 3, 1)
- ③ (삭제 2009. 3. 1)

제 12 장 준용규정 및 기타

제58조 (준용규칙) 본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와 대학원 학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3. 1)

제59조 (시행규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료학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수료학점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학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2.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24. 2. 21)

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과 및 학생정원

(천안캠퍼스)

과 정 별	학 과 별	전 공 분 야	정 원	
	성서신학과	신약학전공, 구약학전공		
목회신학석사	이론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역사신학전공,		
(M.Div) •	실천신학과	실천신학전공	25.04	
신학석사 (Th.M.)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전공	- 35명 - -	
(M.T.S.)	현대선교학과	현대선교학전공		
	목회상담학과	목회상담학전공		
	성서신학과	신약학전공, 구약학전공		
목회신학박사	이론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역사신학전공, 성서와 과학신학전공		
(D.Min) •	실천신학과	실천신학전공	18명	
철학박사 (Ph.D.)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전공		
(111.0.)	현대선교학과	현대선교학전공		
	목회상담학과	목회상담학전공		

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위의 종별(제52조 관련)

과 정 별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성서신학과		_
	M.Div. (2년 과정/3년 과정)	이론신학과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신학석사 (M.Div.)	
		현대선교학과	(,,,,,,,,,,,,,,,,,,,,,,,,,,,,,,,,,,,,,,	
		목회상담학과		
		신학과(계약학과)		
석사과정	Th.M. M.T.S.	성서신학과		
		이론신학과		_
		실천신학과	신학석사(Th.M.)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석사(M.T.S.)	
		현대선교학과		
		목회상담학과		
		신학과(계약학과)	신학석사(Th.M.)	_
	D.Min.	성서신학과		목회신학박사 (D.Min)
		이론신학과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_	
		현대선교학과		
		목회상담학과		
박사과정	Ph.D.	성서신학과		철학박사(Ph.D.)
		이론신학과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_	
		현대선교학과		
		목회상담학과		
		신학과(계약학과)		

(별지서식1)

제 호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서 년 월간 연구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장 00박사 000(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 학과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장 00박사 000(인)

(별지 제3호 서식)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있는 경우)(개정 2019, 2, 26)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석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3호의1 서식]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없는 경우)(신설 2019. 2. 26)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석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장 학 위 〇 〇(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3호의2 서식]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신설 2019. 2. 26)

HOSEO UNIV	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	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ride conferred aport				
$\circ \circ \circ$				
the degree of				
Master of OOO				
in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	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	eology, Hoseo University,			
this OO day of OO, OO	000			
000				
Dean,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4호 서식]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개정 2019. 2. 26)

박 제 0000 호

학 위 기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박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박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박)○○○

[별지 제4호의1 서식]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영문학위기(신설 2019. 2. 26)

HOSEO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circ \circ \circ$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ven at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Hoseo University,
this OO day of OO, OOOO
)00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Given at

Dean,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resident of the University